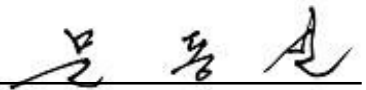


군산시의회 제14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호적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0년 6월 30일

군산시 조례 제935호

군산시 호적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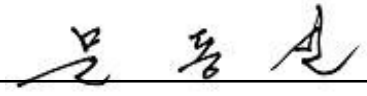
군산시 호적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제14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0년 6월 30일

군산시 조례 제936호

군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군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지역내 중소기업 간의 상생의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말한다.
3.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2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유통업 관련 업무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산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지역내 상공회의소 관계자
3. 지역내 대학에서 유통관련전공 대학교수
4. 지역내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5. 지역내 재래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농수산 생산자) 대표
6. 지역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7. 지역내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8. 지역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협의회의원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유통업 관련 업무 과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 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협력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7.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를 위한 협약에 관한 사항
8. 제1호에서 제7호까지 외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협력 촉진 및 지역유통사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① 시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의 입점 확대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가 생산한 지역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용역 외부 위탁 시 지역업체 활용 확대에 관한 사항

제7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출석 요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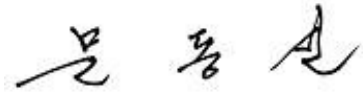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제14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0년 6월 30일

군산시 조례 제937호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수련관의 설치 목적과 관리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전부 개정

[별표 1]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제8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기 준	평 일	토·일·공휴일	
청소년극장	08:00~12:00	100,000	120,000	
	13:00~17:00	100,000	120,000	
	18:00~22:00	120,000	140,000	
체 육 관	동아리 (20명 이내)	08:00~12:00	50,000	60,000
		13:00~17:00	50,000	60,000
		18:00~22:00	60,000	70,000
	경기 및 행사	08:00~12:00	120,000	140,000
		13:00~17:00	120,000	140,000
		18:00~22:00	140,000	170,000
강의실	1시간	10,000	12,000	
취미교실	1시간	10,000	12,000	
음악감상실	1시간	20,000	24,000	
디스코텍	1시간	30,000	36,000	
세미나실	1회(4시간)	100,000	120,000	
연회장	1회(4시간)	200,000	240,000	
구숙소	1인당, 1박	· 청소년 : 5,000	· 일반 : 8,000	
신숙소	6인실(침대), 1박	· 청소년 : 60,000	· 일반 : 90,000	
	8인실(온돌), 1박	· 청소년 : 64,000	· 일반 : 96,000	
	10인실(온돌), 1박	· 청소년 : 80,000	· 일반 : 120,000	
	12인실(온돌), 1박	· 청소년 : 96,000	· 일반 : 144,000	
	15인실(온돌), 1박	· 청소년 : 120,000	· 일반 : 180,000	
	※ 단, 수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품 명		단 위	사 용 료	비 고
피 아 노		1회	30,000	1회(4시간)
빔프로젝트(B/P)		1회	30,000	1회(4시간)
조 명	체 육 관	1시간	20,000	서치라이트
	청소년극장	1시간	20,000	
음 향	마이크(유선,무선)	1개	5,000	기본(2개)외 추가당

3. 냉난방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청소년극장	1시간	50,000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연 회 장	1시간	30,000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기타시설	1시간	10,000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체육관 난방은 행사 주최 측에서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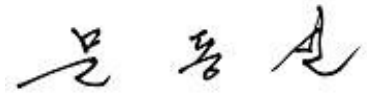
4. 기타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아치설치료	1시간	5,000	

군산시의회 제14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0년 6월 30일

군산시 조례 제938호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규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을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명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공연·행사장(이하“지역축제 등”이라 한다)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산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위원장(부시장)”을 “위원장(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산소방서장

제3조제1항제4호 중 “시”를 “군산시(이하“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산교육청 교육장

6.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제3조제1항제7호 중 “군산시”를 “시”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군산시”를 “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회무를 통 할한다”를 “업무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군산시 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자가 대행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6조제3항 중 “위원회의 회의”를 “회의”로,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 회의에 올리는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7조제2항중 “부시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칭하고”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기관의 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u>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위원회의 기능) <u>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u></p> <p>1. ~ 4. (생략)</p> <p><신설></p> <p>5. (생략)</p> <p>6. (생략)</p>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u>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u>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위원회의 기능) <u>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u></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명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 축제·공연·행사장(이하 “지역 축제 등”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u>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산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u></p>

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
원장(부시장)

2. 시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
장 및 군산소방서장

3. (생략)

4. 시 관할 군부대장

5. 군산시교육장

6. 군산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다)

7. 군산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
체의 장

8. (생략)

②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
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
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군산시
재난관리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
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호의 자가 된다.

1. ----- 위
원장(건설교통국장)

2. 군산소방서장

3. (현행과 같음)

4. 군산시(이하 “시” 라 한다) ---

5. 군산교육청 교육장

6.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

7. 시 -----

8.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
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
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
----- 1명----- 시 --
-----.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

-----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산시 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 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생략)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군산시 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자가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 회의에 올리는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생략)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출석으로 개의하고 -----
----- . 다만,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기관의 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

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10 - 74호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6. 25.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나운동 796번지외 1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 설 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면적	비 고
공공.문화 체육시설	문화시설	12,843.6㎡	12,843.6㎡	기존시설 리모델링 (일부시설 용도변경 통신→업무)
소 계		12,843.6㎡	12,843.6㎡	

3. 사업시행자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공영사업과장)

4.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0. 6. ~ 2010. 11. 30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조서 : 붙임조서 참조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동	지 번	지목	지 적 (㎡)	편 입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관리내용	
1	나운동	796	대지	6,234	6,234	한국방송공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군산시	사용승락	
2	나운동	797	대지	6,609.6	6,609.6	한국방송공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군산시	사용승락	
합계			7필	12,843.6	12,843.6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군산시 고시 제 2010 - 76호

2010년 자연마을단위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에 따른 지적도근점(113점) 측량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28일

군 산 시 장

지적측량기준점			BESSEL		GRS 80			토지소재	설치 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평면직각 중형선수치				표고 (m)				위도	경도
명칭	번호	원점명	X(m)	Y(m)	X(m)	Y(m)						
지적도근점	51363	중부	283785.04	187526.93	384091.73	187599.07	9.82	36°03'15.9"	126°51'44.5"	나포리 318	10.4.11	토지정보과
"	51364	"	283510.27	187290.58	383557.19	186908.01	20.54	36°03'07.0"	126°51'35.1"	나포리 335	"	"
"	51365	"	283250.53	186835.86	383272.63	187119.75	7.88	36°02'58.5"	126°51'16.9"	나포리 531-1	"	"
"	51366	"	282965.95	187047.60	383051.07	187270.66	13.64	36°02'49.3"	126°51'25.4"	나포리 392-2	"	"
"	51367	"	282744.39	187198.50	382779.32	187051.62	9.75	36°02'42.1"	126°51'31.5"	나포리 212	"	"
"	51368	"	282472.65	186979.45	382779.32	187051.62	5.03	36°02'33.3"	126°51'22.7"	나포리 767-5	"	"
"	51369	"	282164.20	187114.88	382470.87	187187.05	6.09	36°02'23.3"	126°51'28.2"	나포리 773-4	"	"
"	51370	"	282257.24	187618.36	382563.93	187690.53	14.48	36°02'26.3"	126°51'48.3"	나포리 49	"	"
"	51371	"	282780.04	186658.64	383086.71	198730.80	5.31	36°02'43.3"	126°51'09.9"	나포리 872-9	"	"
"	51372	"	281401.48	184873.24	381708.11	184945.43	5.46	36°01'58.4"	126°49'58.7"	옥곶리 533-2	"	"
"	51373	"	281313.97	185106.24	381620.61	185178.43	9.10	36°01'55.6"	126°50'08.0"	옥곶리 564-4	"	"
"	51374	"	281190.34	185331.23	381496.97	185403.42	14.84	36°01'51.6"	126°50'17.0"	옥곶리 185	"	"
"	51375	"	282180.38	185265.08	382487.02	18533.26	4.50	36°02'23.7"	126°50'14.2"	옥곶리 940-13	"	"

지적측량기준점			BESSEL		GRS 80				토지소재	설치 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평면직각 종횡선수치				표고 (m)	위도				경도
명칭	번호	원점명	X(m)	Y(m)	X(m)	Y(m)						
지적도근점	51376	중부	281977.65	185464.02	382284.29	185536.20	8.83	36°02'17.2"	126°50'22.2"	옥곡리 185	10.4.11	토지정보과
"	51377	"	282389.44	185504.84	382696.09	185577.00	5.67	36°02'30.5"	126°50'23.8"	옥곡리 934-1	"	"
"	51378	"	282167.65	185636.68	382474.30	18508.86	8.93	36°02'23.3"	126°50'29.1"	옥곡리 76	"	"
"	51379	"	283128.69	186150.10	383435.34	186222.25	8.81	36°02'54.5"	126°50'49.6"	나포리 642-3	"	"
"	51380	"	281923.22	187017.81	382229.90	187089.99	6.01	36°02'15.5"	126°51'24.3"	장상리 887-1	"	"
"	51381	"	281688.87	186925.66	381995.55	186997.84	6.39	36°02'07.9"	126°51'20.6"	장상리 891-1	"	"
"	51382	"	280757.81	187382.43	381064.50	187454.63	14.79	36°01'37.7"	126°51'38.9"	장상리 346-2	"	"
"	51383	"	283014.16	186384.23	383320.82	186456.39	8.84	36°02'50.8"	126°50'58.9"	나포리 681-1	"	"
"	51384	"	280719.92	186481.46	381026.59	186553.66	30.94	36°01'36.4"	126°51'02.9"	장상리 830	"	"
"	51385	"	280920.50	186912.40	381227.17	186984.60	32.72	36°01'42.9"	126°51'20.1"	장상리 산232-1	"	"
"	51386	"	280425.08	187292.75	380731.76	187364.97	26.82	36°01'26.9"	126°51'35.4"	장상리 313-1	"	"
"	51387	"	280742.48	187657.07	381049.17	187729.27	26.96	36°01'37.2"	126°51'49.9"	장상리 77-1	"	"
"	51388	"	278285.49	184756.08	378592.12	184828.34	9.90	36°00'17.3"	126°49'54.2"	부곡리 731	"	"
"	51389	"	278144.82	185026.49	378451.46	185098.76	20.24	36°00'12.8"	126°50'05.0"	부곡리 90-1	"	"
"	51390	"	278063.46	184217.49	378370.08	184289.76	8.46	36°00'10.1"	126°49'32.7"	부곡리 743	"	"
"	51391	"	278453.78	184632.34	378760.41	184704.60	18.86	36°00'22.8"	126°49'49.2"	부곡리 138-1	"	"
"	51392	"	278354.09	184068.52	378660.71	184140.79	5.68	36°00'19.5"	126°49'26.7"	주곡리 535	"	"
"	51393	"	278615.58	183849.28	378922.19	183921.54	5.89	36°00'28.0"	126°49'18.0"	주곡리 1009	"	"
"	51394	"	278724.86	184056.26	379031.48	184128.51	8.06	36°00'31.6"	126°49'26.2"	주곡리 465-1	"	"
"	51395	"	278799.27	184473.38	379105.90	184545.63	19.59	36°00'34.0"	126°49'42.9"	주곡리 26	"	"
"	51396	"	278878.58	183974.81	379185.20	184047.06	8.35	36°00'36.5"	126°49'23.0"	주곡리 375-1	"	"
"	51397	"	279003.40	183675.33	379310.01	183747.58	5.65	36°00'40.6"	126°49'11.0"	주곡리 354-1	"	"
"	51398	"	279557.20	184021.95	379863.82	184094.19	15.94	36°00'58.6"	126°49'24.8"	주곡리 57-6	"	"
"	51399	"	279646.05	184452.46	379952.68	184524.69	15.57	36°01'01.5"	126°49'42.0"	주곡리 5	"	"
"	51400	"	279498.82	183635.30	379805.44	183707.54	11.35	36°00'56.6"	126°49'09.4"	주곡리 281-4	"	"
"	51401	"	279764.65	183493.57	380071.25	183565.80	9.39	36°01'05.3"	126°49'03.7"	주곡리 217	"	"
"	51402	"	279670.39	183370.88	379976.99	183443.11	5.43	36°01'02.2"	126°48'58.8"	주곡리 880	"	"

지적측량기준점			BESSEL		GRS 80					토지소재	설치 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평면직각 종횡선수치				표고 (m)	위도	경도			
명칭	번호	원점명	X(m)	Y(m)	X(m)	Y(m)						
지적도근점	51403	중부	280158.65	183744.90	380465.26	183717.12	9.07	36°01'18.0"	126°49'13.7"	주곡리 172	10.4.11	토지정보 과
"	51404	"	280264.90	183679.30	380571.50	183751.52	4.18	36°01'21.5"	126°49'11.0"	주곡리 849-19	"	"
"	51405	"	280311.08	181897.33	380617.65	181969.55	4.42	36°01'22.9"	126°47'59.9"	주곡리 833-3	"	"
"	51406	"	280054.01	181612.33	380360.57	181684.56	7.97	36°01'14.5"	126°47'48.5"	서포리 342-7	"	"
"	51407	"	278609.21	181401.85	378915.77	181474.12	9.39	36°00'27.6"	126°47'40.2"	여방리 613-5	"	"
"	51408	"	278818.61	181048.92	379125.16	181121.18	18.41	36°00'34.4"	126°57'26.1"	여방리 696-1	"	"
"	51409	"	279850.79	181092.46	380157.34	181164.70	23.14	36°01'07.9"	126°47'27.8"	서포리 534-1	"	"
"	51410	"	280149.60	181053.09	380456.15	181125.32	22.89	36°01'17.6"	126°47'26.2"	서포리 544-7	"	"
"	51411	"	280364.11	179934.55	380670.64	180006.78	7.50	36°01'24.5"	126°46'41.5"	성덕리 155-17	"	"
"	51412	"	279952.86	180015.25	380259.39	180087.49	4.49	36°01'11.1"	126°46'44.7"	성덕리 101-3	"	"
"	51413	"	280077.38	179526.15	380383.89	179598.38	5.81	36°01'15.1"	126°46'25.2"	성덕리 128-1	"	"
"	51414	"	279747.01	179331.56	380053.52	179403.81	8.60	36°01'04.4"	126°46'17.5"	성덕리 250	"	"
"	51415	"	279582.26	179236.97	379888.77	179309.22	5.84	36°00'59.0"	126°46'13.7"	성덕리 491-3	"	"
"	51416	"	278234.07	179654.46	378540.59	179726.74	19.12	36°00'15.3"	126°46'30.5"	성덕리 234-4	"	"
"	51417	"	277952.93	179695.92	378259.45	179768.20	12.33	36°00'06.2"	126°46'32.2"	성덕리 196-1	"	"
"	51418	"	277719.70	179821.59	378026.23	179893.88	21.85	35°59'58.7"	126°46'37.2"	성덕리 131	"	"
"	51419	"	277462.56	179856.24	377769.09	179928.53	10.56	35°59'50.3"	126°46'38.6"	성덕리 116-11	"	"
"	51420	"	278218.98	182018.93	378525.56	182091.20	5.96	36°00'15.0"	126°48'04.9"	여방리 472-2	"	"
"	51421	"	277843.52	182197.67	378150.10	182269.95	8.93	36°02'02.8"	126°48'12.1"	여방리 47-1	"	"
"	51422	"	277945.51	181898.83	378252.08	181971.11	8.57	36°00'06.1"	126°48'00.1"	여방리 487-1	"	"
"	51423	"	277285.20	181737.75	377591.77	181810.04	19.75	35°59'44.7"	126°47'53.8"	도암리 137-1	"	"
"	51424	"	277108.31	181905.20	377414.89	181977.49	16.78	35°59'39.0"	126°48'00.5"	도암리 152-1	"	"
"	51425	"	276401.79	182294.89	376708.37	182367.20	26.24	35°59'16.1"	126°48'16.1"	도암리 61-1	"	"
"	51426	"	276744.27	182089.71	377050.84	182162.01	15.67	35°59'27.2"	126°48'07.9"	도암리 29-2	"	"
"	51427	"	276748.00	181819.41	377054.57	181891.72	13.54	35°59'27.3"	126°47'57.1"	도암리 80	"	"
"	51428	"	275586.93	183311.19	37589354	183383.52	16.08	35°58'49.7"	126°48'56.7"	산곡리 534-6	"	"
"	51429	"	275415.06	183068.13	375721.66	183140.46	16.34	35°58'44.1"	126°48'47.0"	산곡리 517-1	"	"

지적측량기준점			BESSEL		GRS 80				토지소재	설치 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평면직각 종횡선수치				표고 (m)	위도				경도
명칭	번호	원점명	X(m)	Y(m)	X(m)	Y(m)						
지적도근점	51430	중부	276067.80	184614.10	376374.44	184686.41	15.33	35°59'05.4"	126°49'48.7"	미원리 626-1	10.4.11	토지정보과
"	51431	"	275823.08	184612.43	376129.72	184684.75	8.23	35°58'57.4"	126°49'48.6"	미원리 733	"	"
"	51432	"	276438.33	184807.19	376744.97	184879.49	14.48	35°59'17.4"	126°49'56.4"	미원리 1069-10	"	"
"	51433	"	276601.00	184659.57	376907.64	184731.87	18.20	35°59'22.7"	126°49'50.5"	미원리 588-1	"	"
"	51434	"	277528.25	184532.34	377834.88	184604.62	9.88	35°59'52.8"	126°49'45.3"	부곡리 355	"	"
"	51435	"	277510.10	184842.26	377816.74	184914.54	16.02	35°59'52.2"	126°49'57.7"	부곡리 532-3	"	"
"	51436	"	277555.27	183625.80	377861.89	183698.08	12.17	35°59'53.6"	126°49'09.1"	대명리 125-5	"	"
"	51437	"	277458.95	183548.03	377765.56	183620.32	16.40	35°59'50.4"	126°49'06.0"	대명리 117-1	"	"
"	51438	"	274883.66	185429.33	375190.33	185501.66	6.67	35°58'27.0"	126°50'21.3"	미원리 934-1	"	"
"	51439	"	274897.88	185629.06	375204.54	185701.39	11.21	35°58'27.5"	126°50'29.3"	미원리 319-1	"	"
"	51440	"	274691.66	185521.47	384998.34	185593.80	9.33	35°58'20.8"	126°50'25.0"	미원리 190-5	"	"
"	51441	"	278868.78	178465.56	379175.27	178537.82	9.07	36°00'35.8"	126°45'43.0"	성덕리 482-9	"	"
"	51442	"	278912.31	178652.42	379218.81	178724.69	14.87	36°00'37.3"	126°45'50.4"	성덕리 357	"	"
"	51443	"	277094.19	178899.28	377400.70	178971.58	7.04	35°59'38.3"	126°46'00.4"	성덕리 506-1	"	"
"	51444	"	276908.47	179092.09	377214.99	179164.39	5.19	35°59'32.3"	126°46'08.2"	둔덕리 385-1	"	"
"	51445	"	276941.01	179330.55	377247.53	179402.85	4.74	35°59'33.4"	126°46'17.7"	둔덕리 418-3	"	"
"	51446	"	277186.94	179340.50	377493.45	179412.79	8.48	35°59'41.3"	126°46'18.1"	둔덕리 410-1	"	"
"	51447	"	277869.36	180788.99	378175.91	180861.27	11.57	36°00'03.6"	126°47'15.8"	도암리 565-5	"	"
"	51448	"	278084.34	180739.89	378390.89	180812.16	18.88	36°00'10.6"	126°47'13.9"	도암리 603-5	"	"
"	51449	"	277701.13	181097.07	378007.68	181169.35	10.07	35°59'58.1"	126°47'28.1"	도암리 239-1	"	"
"	51450	"	277899.40	181134.54	378205.96	181106.82	17.06	36°00'04.6"	126°47'29.6"	도암리 224	"	"
"	51451	"	277615.05	181439.57	377921.62	181511.86	15.30	35°59'55.4"	126°47'41.8"	도암리 206-8	"	"
"	51452	"	276866.54	181353.71	377173.10	181426.02	7.66	35°59'31.1"	126°47'38.5"	도암리 318-1	"	"
"	51453	"	276660.95	181242.38	376967.51	81314.69	11.08	35°59'24.4"	126°47'34.0"	도암리 332-1	"	"
"	51454	"	275302.49	183937.24	375609.12	184009.56	12.46	35°58'40.5"	126°49'21.7"	산곡리 286	"	"
"	51455	"	275108.46	183907.41	375415.10	183979.74	16.59	35°58'34.2"	126°49'20.5"	산곡리 336	"	"
"	51456	"	274970.65	184022.83	375277.29	184095.16	10.74	35°58'29.7"	126°49'25.2"	산곡리 87-2	"	"

지적측량기준점			BESSEL		GRS 80				토지소재	설치 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평면직각 종횡선수치				표고 (m)	위도				경도
명칭	번호	원점명	X(m)	Y(m)	X(m)	Y(m)						
지적도근점	51457	중부	275194.89	184180.09	375501.54	184252.43	12.58	35°58'37.0"	126°49'31.4"	산곡리 152-4	10.4.11	토지정보 과
"	51458	"	275839.33	186395.33	376146.02	186467.64	12.19	35°58'58.1"	126°50'59.8"	읍내리 748-3	"	"
"	51459	"	275527.73	186565.56	375834.42	186637.88	27.67	35°58'48.0"	126°51'06.6"	미원리 147-3	"	"
"	51460	"	275300.54	185960.08	375607.22	186032.41	12.27	35°58'40.6"	126°50'42.5"	미원리 717-1	"	"
"	51461	"	275120.76	185852.09	375427.43	185924.42	21.02	35°58'34.7"	126°50'38.2"	미원리 366	"	"
"	51462	"	275276.86	185824.83	375583.53	185897.15	14.50	35°58'39.8"	126°50'37.1"	미원리 383-3	"	"
"	51463	"	275738.78	185249.61	376045.43	185321.93	8.43	35°58'54.7"	126°50'14.1"	미원리 1051-4	"	"
"	51464	"	275708.45	185047.09	376015.09	185119.40	12.98	35°58'53.7"	126°50'06.0"	미원리 464-1	"	"
"	51465	"	275931.25	185121.37	376237.90	185193.69	16.23	35°59'01.0"	126°50'08.9"	미원리 501-3	"	"
"	51466	"	275986.22	185320.44	376292.87	185392.75	14.91	35°59'02.8"	126°50'16.9"	미원리 532-3	"	"
"	51467	"	276208.62	185302.72	376515.27	185375.02	20.21	35°59'10.0"	126°50'16.2"	미원리 545	"	"
"	51468	"	276110.52	185673.99	376417.18	185746.30	12.02	35°59'06.8"	126°50'31.0"	미원리 655-3	"	"
"	51469	"	276382.03	185664.60	376688.69	185736.90	17.59	35°59'15.6"	126°50'30.6"	미원리 632	"	"
"	51470	"	276392.99	185488.72	376699.64	185561.02	19.53	35°59'16.0"	126°50'23.6"	미원리 623	"	"
"	51471	"	276650.65	185726.39	376957.31	185798.69	21.94	35°59'24.3"	126°50'33.0"	미원리 557-2	"	"
"	51472	"	276461.72	185916.84	376768.39	185989.14	17.38	35°59'18.2"	126°50'40.7"	미원리 593	"	"
"	51473	"	273550.66	186306.75	373857.35	186379.13	10.85	35°57'43.8"	126°50'56.4"	미원리 298-4	"	"
"	51474	"	273518.15	185982.28	373824.83	186054.65	7.01	35°57'42.7"	126°50'43.5"	미원리 461	"	"
"	51475	"	273532.48	185746.46	373839.15	185818.82	7.73	35°57'43.2"	126°50'34.1"	미원리 477-1		
					이	하	여	백				

군산시 고시 제2010-77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가고시

「주택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 06. .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유)하이스종합건설 나운동 하이스빌 신축
2. 사업주체 : (유)하이스종합건설 / 대표 : 김정철
3. 사업위치 : 군산시 나운동 749-4
4. 사업내용
 - 가. 대지면적 : 1,855.8㎡
 - 나. 건축면적 : 700.54㎡
 - 다. 연 면 적 : 3,683.9㎡

라. 건축규모 : 연립주택 1동 7층, 48세대

- 74.6075형(전용면적 : 56.6694㎡) 24세대

- 77.9379형(전용면적 : 59.4034㎡) 24세대

마.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바. 사업비 : 3,407천원

사. 사업기간 : 2010. 05 ~ 2011. 04

5. 설계도서 : (변경)승인 설계도서와 같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
063-450-4471)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하반기 도축세 시가액 결정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10-78호

지방세법 제234조의2 제2항 및 군산시 시세 조례 제53조에 따라 2010년 하반기 적용 도축세 시가의 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1. 시행일자 : 2010. 7. 1
2. 결정내용

구 분		단 위	시가의 가액(원)	세 율	세 액(원)
소	한 우	마리당 (500kg)	2,750,000	시가의 10/1,000	27,500
	육 우	"	1,300,000	"	13,000
	유 우	"	600,000	"	6,000
돼 지	마리당 (100kg)	135,000	"	1,350	

2010. 6. 29.

군 산 시 장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군산시 고시 제 2010 - 79호

2010년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사업에 따른 지적도근점(80점) 측량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29일

군 산 시 장

지적측량기준점			평면직각 중횡선수치(Bessel)		토지소재지	표지재질	설치 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명칭	번호	원점명	X(m)	Y(m)				
지적도근점	2	중부	275499.42	175250.15	소룡동 1530	철재	2010.5.20	토지정보과
“	4	“	275338.15	171184.50	소룡동 863-1	“	“	“
“	5	“	275582.23	171265.87	소룡동 1471-5	“	“	“
“	521	“	273564.71	176626.50	사정동 362-1	“	“	“
“	523	“	273575.27	176751.88	사정동 356-10	“	“	“
“	525	“	273711.70	176782.34	사정동 421-4	“	“	“
“	526	“	273758.70	176824.49	사정동 412-1	“	“	“
“	527	“	273654.70	176838.37	사정동 415-11	“	“	“
“	528	“	273584.70	176875.46	사정동 358-9	“	“	“
“	566	“	274094.63	176412.26	조촌동 754-36	“	“	“
“	578	“	274444.70	176274.50	조촌동 871	“	“	“
“	595	“	274814.33	175780.28	조촌동 789-15	“	“	“
“	618	“	274783.32	175493.82	경장동 492-5	“	“	“
“	651	“	274573.38	175611.18	경장동 507-3	“	“	“

지적측량기준점			평균직각 중횡선수치(Bessel)		토지소재지	표지재질	설치 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명칭	번호	원점 명	X(m)	Y(m)				
지적 도근점	656	중부	274802.60	175395.55	경장동 484-1	철재	2010.5.20	토지정보과
“	657	“	274745.18	175449.42	경장동 490-6	“	“	“
“	671	“	274635.52	175679.79	경장동 499-25	“	“	“
“	683	“	275194.40	175265.62	경암동 673-21	“	“	“
“	684	“	275070.70	175259.80	경암동 674-26	“	“	“
“	685	“	275064.87	175322.41	경암동 675-3	“	“	“
“	688	“	275255.19	175323.13	경암동 673-25	“	“	“
“	689	“	275285.44	175323.99	경암동 672-1	“	“	“
“	691	“	275379.76	175378.36	경암동 648-29	“	“	“
“	694	“	275544.68	175438.50	경암동 645-1	“	“	“
“	695	“	275441.64	175437.81	경암동 648-13	“	“	“
“	703	“	274953.41	175434.99	경암동 684-15	“	“	“
“	705	“	275064.25	175547.66	경암동 678-3	“	“	“
“	707	“	275190.90	175550.60	경암동 668-24	“	“	“
“	708	“	275254.25	175550.40	경암동 667-9	“	“	“
“	709	“	275377.50	175550.70	경암동 655-22	“	“	“
“	713	“	275191.37	175322.97	경암동 670-1	“	“	“
“	714	“	275441.25	175672.20	경암동 655-9	“	“	“
“	716	“	275252.48	175671.57	경암동 662-1	“	“	“
“	717	“	275191.60	175670.99	경암동 665-33	“	“	“
“	725	“	275441.77	175771.56	경암동 641-10	“	“	“
“	740	“	275009.0	175320.36	경암동 675-17	“	“	“
“	746	“	275441.47	175550.60	경암동 655-1	“	“	“
“	892	“	274884.74	170723.24	산북동 1231	“	“	“
“	893	“	274798.21	170659.18	소룡동 1556-13	“	“	“
“	895	“	274576.60	170639.33	소룡동 1559-9	“	“	“
“	897	“	274443.34	170636.99	산북동 1565-6	“	“	“
“	898	“	274220.90	170625.56	산북동 3551	“	“	“
“	908	“	274828.28	170690.33	소룡동 1556-14	“	“	“

지적측량기준점			평면직각 증횡선수치(Bessel)		토지소재지	표지재질	설치 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명칭	번호	원점 명	X(m)	Y(m)				
지적 도근점	913	중부	274919.68	171420.20	소룡동 1343-7	철재	2010.5.20	토지정보과
“	921	“	274301.61	171453.20	소룡동 1677	“	“	“
“	936	“	274381.47	171441.63	소룡동 1543-1	“	“	“
“	938	“	274435.60	171377.91	소룡동 1545-2	“	“	“
“	940	“	274485.25	171322.74	소룡동 1542-5	“	“	“
“	974	“	274954.80	170856.70	소룡동 1538-8	“	“	“
“	1002	“	274700.10	170845.31	소룡동 1552-7	“	“	“
“	1018	“	274636.92	170885.16	소룡동 1551-4	“	“	“
“	1021	“	274486.71	170873.98	소룡동 1562-8	“	“	“
“	1022	“	274423.16	170870.71	소룡동 1568-11	“	“	“
“	1046	“	274369.53	170985.35	산북동 3535-8	“	“	“
“	1048	“	274478.48	170988.22	소룡동 1571-11	“	“	“
“	1049	“	274552.60	170988.79	소룡동 1564-8	“	“	“
“	1050	“	274669.11	171024.60	소룡동 1550-3	“	“	“
“	1060	“	274120.87	171014.34	산북동 3547-4	“	“	“
“	1151	“	275117.25	171017.27	소룡동 1485	“	“	“
“	1165	“	274960.33	175990.93	조촌동 834-13	“	“	“
“	1166	“	275001.79	175990.79	조촌동 686-6	“	“	“
“	1176	“	274858.95	176207.40	조촌동 828-4	“	“	“
“	1202	“	274859.16	176097.65	조촌동 835-25	“	“	“
“	1215	“	274440.59	175997.52	조촌동 863	“	“	“
“	1224	“	274043.59	176113.22	조촌동 896	“	“	“
“	1355	“	272845.54	170830.83	미룡동 864-2	“	“	“
“	1386	“	273508.76	170750.66	산북동 3603-8	“	“	“
“	1410	“	273725.79	170702.74	산북동 3599	“	“	“
“	1436	“	272886.19	170588.32	미룡동 858-8	“	“	“
“	1508	“	272974.34	170061.83	산북동 331-1	“	“	“
“	1512	“	273144.26	171004.11	미룡동 849-5	“	“	“
“	2211	“	274448.64	176715.95	조촌동 184	“	“	“

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10 - 80호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과 한국전력공사(중부건설단)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7. 2.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11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변전소)

나. 명 칭 : 군산변전소 전력구 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시 설 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 고
		면적(㎡)	면적(㎡)	
군 산 변 전 소	전기공급설비 (변전소)	104,596	104,596	기존시설에 전력구설치 (A=1,121㎡)
소 계		104,596	104,596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김쌍수

나.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0. 5 ~ 2011. 5.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소유자 및 권리자 명세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군산시)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등기부등분)		소유자 (토지대장)		비 고
	면	리	지번	지목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임피	보석	114-1	잡	78,169	78,169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한국전력공사			
2	“	“	114-2	도	2,536	2,536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한국전력공사			
3	“	“	115-2	답	8	8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한국전력공사			
4	“	월하	816-1	잡	23,883	23,883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한국전력공사			
계					104,596	104,596					

군산시 공고 제2010-1057호

2010. 하반기 비응항 청소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1. 채용 인원 : 3명
 2. 작업장 위치 : 군산시 비응항 일대
 3. 작업 내용 : 비응항 일대 청소 및 제초작업
 4. 채용 기간 : 2010. 7. 1. ~ 2010. 12. 31.
 5. 노임 및 근무조건
 - 가. 1일 35,000원 (법정수당 별도지급 :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 나. 1일 8시간, 주 40시간(주 5일) 근무
 - 다. 휴일근무 : 1주 1일 휴일근무 실시 (기본급 1.5배 지급)
(단, 필요시 다른 날로 휴일변경 가능)
 - 라.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보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50% 본인부담)
 6. 신청 자격
 - 가. 주민등록상 군산시 거주자
 - 나. 신체 건강한 만 18세 이상인자 (1992년 6월 21일 이후 출생)
 - 다. 기타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7. 채용 방법 : 면접
 8. 신청서 접수 : 2010. 6. 23(수) (09:00~18:00)
 - 가. 신청서 소정양식 항만물류과 배부 및 홈페이지 게시
 - 나. 군산시 시청로8가 군산시청 6층 항만물류과 방문접수
 - 다. 주민등록등본 1부. 사진1매. 도장 지참
 9. 면접 : 2010. 6. 24(목) 10:30 (장소 : 군산시청 4층 상황실)
 10. 최종 채용자 발표 : 2010. 6. 28(개별통보)
- * 문의처 : 군산시 항만물류과 항만시설계 (450-4382)

2010년 6월 21일

군 산 시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0-1059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 화장시설 화장로 증설 및 교체사업에 따른 화장시설 가동이 중단됨을 공고하오니 화장업무 관련기관·업체에서는 장례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장시설 가동중단 기간내에는 인근 타 시·군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6. .

군 산 시 장

1. 가동중단기간 : 2010. 7. 5 ~ 9. 30

※ 기간내 봉안당업무는 정상 운영

2. 가동중단사유 : 화장로 증설 및 교체

3. 전북도내 이용가능 화장시설 현황

화장시설명	위 치	전화번호	비 고
전주시 승화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산170-1번지	063)239-2690	
익산시 정수원	익산시 석왕동 235-13번지	063)859-3840	
남원시 승화원	남원시 광치동 690-1번지	063)632-5874	

※ 문의사항

- 군산시청 복지지원과 복지시설계 (063-450-6160)
- 군산시 승화원·추모관 관리사무실 (063-453-4055)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0 - 1070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0. 6. 25

군 산 시 장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가. 사업시행지 :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633-7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 사업
- 2) 명 칭 : 농업기술센터 증축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설명	결정조서	실시계획면적	비 고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30,166㎡	30,166㎡	
소 계		30,166㎡	30,166㎡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농업기술센터)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0. 7. ~ 2011. 7.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450-4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제외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이름	주소	이름	주소	권리 내용		
1	개정면 운회리	633-7	대	9,704	9,704	-	군산시						
2		633-8	답	5,034	5,034	-	군산시						
3		633-121	답	4,222	4,222	-	군산시						
4		633-122	답	2,977	2,977	-	군산시						
5		634-11	구	66	62	4	안동철	옥구군 개정면 운회리 512					
6		634-12	구	66	66	-	장완식	옥구군 개정면 운회리 541					
7		634-13	구	66	66	-	성낙창	옥구군 개정면 운회리 110					
8		634-14	구	66	66	-	성낙인	옥구군 개정면 운회리 330					
9		634-15	구	66	66	-	국	농림수산부					
10		634-16	구	66	66	-	이황로	옥구군 개정면 운회리 300					
11		634-31	답	3,814	3,814	-	군산시						
12		634-32	답	2,913	2,913	-	군산시						
13		634-65	도	1,110	1,110	-	군산시						
계		13필지		30,170	30,166	4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0 - 1091호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 합니다.

2010. 7. 2.

군 산 시 장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 가. 사업시행지 : 군산시 경암동 367-1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 2)명 칭 : 구)군산역~중동사거리[대로3-4호선] 도로개설공사
 - 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 설 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 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m ²)	
도 로	대로3-4	25	720	25	290	12,143	
소 계					290	12,143	

- 라.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 (도시계획과)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0. 7. ~ 2012. 7.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450-4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도시계획 도로(㎡)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관리내용	
1	경암동	572-90	도	102	2	진전농사합명회사	익산군 오산면 송학리 447			
2	경암동	572-91	도	126	44	군산시				
3	경암동	572-119	대	7	2	군산시				
4	경암동	572-95	도	17	6	군산시				
5	경암동	572-93	도	23	15	군산시				
6	경암동	572-341	도	21	9	군산시				
7	경암동	572-340	도	5	1	국	재무부			
8	경암동	572-92	도	76	24	군산시				
9	경암동	601	도	904	56	국	재무부			
10	경암동	627-96	도	630	167	군산시				
11	경암동	572-3	도	1,965	181	국 외 1인	건설부 외 재정경제원			
12	경암동	599-2	도	1,524	707	국	건설교통부			
13	경암동	616	도	35,734	206	군산시				
14	경암동	599-11	답	179	178	군산시				
15	경암동	627-14	대	331	4	정향심	익산시 모현동 1가 27-2	김삼진	전세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	
16	경암동	627-95	도	856	734	군산시				
17	경암동	367-1	대	416	394	흥권표	218			
18	경암동	627-12	대	122	9	군산시				
19	경암동	602-1	도	918	136	국	건설부			
20	경암동	368-1	대	35	35	흥권표	218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도시계획 도로(㎡)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관리내용	
21	경암동	369-38	임	1,344	1,331	재단법인석파장 학회	369-30			
22	경암동	369-30	대	2,443	157	흥권표	나운동 155-6 롯데아파트 302동 602호	주식회사 한빛은행	근저당권	
23	경암동	371-4	대	535	520	재단법인석파장 학회	369-30			
24	대명동	139-26	철	3,062	3,062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25	대명동	139-28	철	695	695	국	철도청			
26	대명동	138-267	철	237	237	국	철도청			
27	대명동	138-266	철	1,318	1,318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28	대명동	138-265	철	1,107	886	국	철도청			
29	대명동	381	도	5,316	496	국	건설부			
30	대명동	198	도	572	361	주식회사 해동흥업공사				
31	대명동	139-25	철	5,784	11	국	철도청			
32	대명동	138-264	철	6,115	9	국	철도청			
33	대명동	138-3	철	4,782	20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34	장재동	378	도	6,700	130	국	건설부			
소 계				34	12,143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편입지장물조서

연번	지 장 물 소 재 지				편 입 물건명		편입량	면적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 동	번지					주 소	성명	
1	군 산		대명동	138-3	볼라드	콘크리트	19EA	1.6㎡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역사	시멘트벽돌조	1동	520.99㎡			
					보일러실	조립식건물	1동	3.75㎡			
					흡지붕	철골조	1개소	55.0㎡			
2	군 산		대명동	139-28	담장	벽돌	1개소	51.6m	철도청	국	
					수목		11주				
3	군 산		경암동	367-1	건물	시멘트벽돌조 + 스테트	1동	289.31㎡	경암동 218	홍권표	
					가옥	블록 + 스테트	1동	96.03㎡			
					창고	시멘트벽돌조 + 스테트	1동	38.77㎡			
					건물	콘크리트	1동	58.57㎡			
					화장실	시멘트벽돌조 + 스테트	1동	10.72㎡			
					가옥	시멘트벽돌조 + 스테트	1동	64.16㎡			
4	군 산		경암동	369-38	창고	콘크리트	1동	9.18㎡	경암동 369-30	재단법인 석파장학회	
					창고	시멘트벽돌조 + 목조	1동	58.62㎡			
					사무실	컨테이너	1동	23.1㎡			
					창고 (가건물)	목재골조+스레트	1동	125.6㎡			
					창고 (가건물)	철제스레트	1동	53.36㎡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편입지장물조서

연번	지 장 물 소 재 지				편 입 물건명		편입량	면적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 동	번지					주 소	성명	
4	군 산		경암동	369-38	창고 (가건물)	철제,철골 스테트	1동	613.06㎡	경암동 369-30	재단법인 석파장학회	
					가옥	블록+콘크리트	1동	442.59㎡			
					창고	목조+스레트	1동	31.92㎡			
5	군 산		경암동	369-31	창고	조립식 건물	1동	99.45㎡	경암동 369-30	재단법인 석파장학회	

군산시 공고 제2010 -1099호

공 고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연습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0년 7월 2일

1. 위 치 : 군산시 미룡동 656-2 외 5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설명	결 정	실시계획	비 고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30,447㎡	30,447㎡ (건축면적 2,210.22㎡ 연면적 3,295.57㎡)	일부시설 용도변경 (세부시설 조서참조)
소 계		30,447㎡	30,447㎡	

3. 사업시행자

1) 주 소 : 군산시 나운동 롯데4차@ 303/1001

2) 성 명 : 나라골프연습장 대표 한덕수

4. 사업착수 및 준공일 : 2010. 6. ~ 2010. 6. 22.

5.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비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연습장) 세부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안전시설		기타시설	
구분	면적(m ²)	구분	면적(m ²)	구분	면적(m ²)	구분	면적(m ²)	구분	면적(m ²)
계	1,726.40	계	2,702.04	계	562.09	계	1,120.90	계	163.39
골프연습장	1,726.40	주차장	2,132.00	관리사무소	68.03	그물보호망	1,120.90		
		휴게실	85.65	창고	147.09				
		매점	28.36	안내소	271.31				
		-	-	조명시설	○			일반음식점	163.39
		탈의실	356.90	급수시설	39.78				
		욕실	18.60	배수시설	○				
		화장실	80.53	방수시설	35.88				
				각종표지판	○				

- 군산시 공고 제 2101호 -1101호

『201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여가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공동체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201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10. 7월부터(6개월) - 사업별 특수성에 따라 조기종료 가능
- 모집기간 : 2010. 6. 29(화) ~ 7. 8(목)
 - ※ '10 「희망근로사업」 신청자는 종전 신청서로 본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같음
- 모집인원 : 400명 정도

참여 사업유형 안내		
사업분야	사업명	사업장 위치
지역공동체 일자리 10대사업	명품 녹색길(Green Way)조성	군산시 전지역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	군산시 전지역
	희망의 집수리사업	군산시 전지역
	폐자원 재활용사업	군산시 전지역
	취약지역 정비, 외래 동식물 구제(驅除)사업	군산시 전지역
	스쿨존 어린이 안전개선사업	군산시 전지역
	어청도 지역 마을특화 사업	어청도 지역
	마을특화사업 및 향토자원 조사	군산시 전지역
	다문화 가족 등 지원사업	군산시 전지역
	안정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군산시 전지역

※ 단, 어청도 지역 마을특화사업은 어청도 거주자로 제한

□ 참여자격(사업개시일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함)

- 일반참여자 :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우리시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득인정액의 확인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함
- 청년미취업자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서 사업별 정원의 20%를 우선 선발 고용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 공고일 이후 유사목적의 정부지원사업 참여 포기자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부모 및 세대를 달리하면서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포함
 - *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에 포함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 기타 자치단체에서 제외대상으로 추가하는 사항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공고일 직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사본),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 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 서류(필요시 안내)
 - * 납부영수증(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자는 납부확인서제출(공고일 직전월 분)
-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신청자는 부양자(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신청서에 동의로 같음)

□ 근무여건

- 주 3~5일 1일 4~8시간(휴게시간 제외), 임금 1일 33,000원
 - 단,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3일 근

□ 참여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군산시 지역경제과 읍면동 ☎ (063) 450 - 4313

2010. . . .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고 제 2010 - 1102호

공 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거 2010년 1월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주택에 대한 제5회 군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 공시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군 산 시 장

1. 이의신청 개요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0년 1월 1일

나. 조정결정 주택수 : 군산시 경암동 675-25번지 외 41호

다. 조정 · 공시 사항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조정주택

2. 개별주택가격 열람장소

군산시청 세무과(2층) 및 개별주택가격조사상황실(3층)

3.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 결정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세무과 과표담당(☎450-4290, 61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0 - 110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0. 7. 2.

군 산 시 장

1.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2. 열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가. 사업위치 : 군산시 미장동 37-6, 조촌동 238-4 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2) 명 칭 : 송정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사업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도시계획시설 개요			실시계획			비 고
	시설명	폭원	연장	폭원	연장	면적	
도 로	대로1-1	35	5,500	35	310	6,926	변경없음 (지장물 추가)
도 로	중로1-62	20	580	12	94	1,228	
도 로	중로3-25	12	175	12	175	2,129	
소 계						10,283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1) 사업시행자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2) 사업시행자 성명 : (유)송정건설 대표 황의철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9. 1 ~ 2012. 7.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불임조서 참조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450-4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M2)	편입면적 (M2)	토 지 소 유 자		소유권 외 권리자	비 고
구분	시군	동리					주 소	성 명		
당초	군산	미장	37-6	답	6	6	옥구읍 선제리 361	안현철		
변경	군산	미장	37-6	답	6	6	옥구읍 선제리 361	안현철		
당초	"	"	37-8	답	11	11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37-8	답	11	11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37-5	답	91	91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37-5	답	91	91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38-1	답	121	121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38-1	답	121	121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38-2	답	13	13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38-2	답	13	13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39-1	답	235	235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39-1	답	235	235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39-2	답	30	30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39-2	답	30	30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40-1	답	520	520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40-1	답	520	520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40-2	답	36	36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40-2	답	36	36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41-1	답	620	620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41-1	답	620	620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41-10	답	115	115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41-10	답	115	115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41-11	도	352	352		국(건설부)		
변경	"	"	41-11	도	352	352		국(건설부)		
당초	"	"	455-7	도	80	80		국(농수산부)		
변경	"	"	455-7	도	80	80		국(농수산부)		
당초	"	"	455-5	구	2	2		국(농수산부)		
변경	"	"	455-5	구	2	2		국(농수산부)		
당초	"	"	455-6	구	4	4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455-6	구	4	4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456-40	구	646	646		국(농수산부)		
변경	"	"	456-40	구	646	646		국(농수산부)		
당초	"	"	64-45	구	59	59		군산시		
변경	"	"	64-45	구	59	59		군산시		
당초	"	"	64-47	도	458	458		국(건설부)		
변경	"	"	64-47	도	458	458		국(건설부)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M2)	편입면적 (M2)	토 지 소 유 자		소유권 외 권리자	비 고
구분	시군	동리					주 소	성 명		
당초	군산	조촌	455-6	구	4	4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군산	조촌	455-6	구	4	4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456-40	구	646	646		국(농수산부)		
변경	"	"	456-40	구	646	646		국(농수산부)		
당초	"	"	64-45	구	59	59		군산시		
변경	"	"	64-45	구	59	59		군산시		
당초	"	"	64-47	도	458	458		국(건설부)		
변경	"	"	64-47	도	458	458		국(건설부)		
당초	"	"	238-4	도	108	108		국(건설부)		
변경	"	"	238-4	도	108	108		국(건설부)		
당초	"	"	239-32	대	64	64	나운동835 주공30아파트 127동 203호	김근석		
변경	"	"	239-32	대	64	64	나운동835 주공30아파트 127동 203호	김근석		
당초	"	"	239-34	전	180	180	나운동835 주공30아파트 127동 203호	김근석		
변경	"	"	239-34	전	180	180	나운동835 주공30아파트 127동 203호	김근석		
당초	"	"	239-35	전	6	6	나운동835 주공30아파트 127동 203호	김근석		
변경	"	"	239-35	전	6	6	나운동835 주공30아파트 127동 203호	김근석		
당초	"	"	239-36	전	44	44	나운동835 주공30아파트 127동 203호	김근석		
변경	"	"	239-36	전	44	44	나운동835 주공30아파트 127동 203호	김근석		
당초	"	"	239-37	도	125	125		국(건설부)		
변경	"	"	239-37	도	125	125		국(건설부)		
당초	"	"	240-18	대	11	11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40-18	대	11	11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40-11	대	84	84	소룡동 1323-13동아아파트 105동 1302호	이신애		
변경	"	"	240-11	대	84	84	소룡동 1323-13동아아파트 105동 1302호	이신애		
당초	"	"	240-17	대	15	15	소룡동 1323-13동아아파트 105동 1302호	이신애		
변경	"	"	240-17	대	15	15	소룡동 1323-13동아아파트 105동 1302호	이신애		
당초	"	"	240-13	도	11	11		국(건설부)		
변경	"	"	240-13	도	11	11		국(건설부)		
당초	"	"	240-14	도	399	399		국(건설부)		
변경	"	"	240-14	도	399	399		국(건설부)		
당초	"	"	240-15	도	125	125		국(건설부)		
변경	"	"	240-15	도	125	125		국(건설부)		
당초	"	"	240-16	도	72	72		국(건설부)		
변경	"	"	240-16	도	72	72		국(건설부)		
당초	"	"	241-11	도	12	12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41-11	도	12	12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M2)	편입면적 (M2)	토 지 소 유 자		소유권 외 권리자	비 고
구분	시군	동리					주 소	성 명		
당초	군산	조촌	244-9	전	344	344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군산	조촌	244-9	전	344	344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44-4	도	22	22		(유)송정건설, 김대현		
변경	"	"	244-4	도	22	22		(유)송정건설, 김대현		
당초	"	"	244-13	도	70	70		(유)송정건설, 김대현		
변경	"	"	244-13	도	70	70		(유)송정건설, 김대현		
당초	"	"	244-5	대	2	2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44-5	대	2	2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44-15	대	55	55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44-15	대	55	55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44-20	대	12	12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44-20	대	12	12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44-17	대	319	319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44-17	대	319	319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45-10	전	378	378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45-10	전	378	378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45-26	도	64	64		국(건설부)		
변경	"	"	245-26	도	64	64		국(건설부)		
당초	"	"	246-1	대	234	234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46-1	대	234	234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46-18	대	246	246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46-18	대	246	246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46-29	도	9	9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46-29	도	9	9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46-33	임	73	73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46-33	임	73	73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46-46	임	2	2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46-46	임	2	2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47-2	대	29	29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47-2	대	29	29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47-11	도	319	319		국(건설부)		
변경	"	"	247-11	도	319	319		국(건설부)		
당초	"	"	247-9	대	48	48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47-9	대	48	48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51-9	도	50	50		군산시		
변경	"	"	251-9	도	50	50		군산시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M2)	편입면적 (M2)	토 지 소 유 자		소유권 외 권리자	비 고
구분	시군	동리					주 소	성 명		
당초	군산	조촌	239-28	도	104	104		국(건설부)		
변경	군산	조촌	239-28	도	104	104		국(건설부)		
당초	"	"	239-30	임	868	868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39-30	임	868	868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39-47	도	175	175		국(건설부)		
변경	"	"	239-47	도	175	175		국(건설부)		
당초	"	"	246-36	임	248	248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46-36	임	248	248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46-37	도	174	174		(유)송정건설 .국(건설부)		
변경	"	"	246-37	도	174	174		(유)송정건설 .국(건설부)		
당초	"	"	246-38	임	79	79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46-38	임	79	79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46-39	임	178	178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변경	"	"	246-39	임	178	178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유)송정건설		
당초	"	"	246-51	도	119	119		국(건설부)		
변경	"	"	246-51	도	119	119		국(건설부)		
당초	"	"	246-41	임	42	42	경남 거제시 옥포동 524-14 동신궁전빌라 303호	박마리아		
변경	"	"	246-41	임	42	42	경남 거제시 옥포동 524-14 동신궁전빌라 303호	박마리아		
당초	"	"	356-52	도	253	253		국(건설부)		
변경	"	"	356-52	도	253	253		국(건설부)		
당초	"	"	69필지		10,295	10,283				
변경	"	"	69필지		10,295	10,283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구분	연번	위치			지장물	상황및 구조	편입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시	동	지번					주소	성명	
신규	1	군산	조촌	239-32외	주택	경량철골조 적벽돌판넬	92.4	㎡	군산시 나운동 835번지 주공3아파트 127/203	김근석	
					베란다	새시조 판넬	13.65	㎡			
					보일러실	벽돌조 판넬	8.06	㎡			
					창고	경량조골조 판넬	29.2	㎡			
					바닥포장	콘크리트	1	식			
					담장	적벽돌	60	m			
						능형망					
					대문		1	식			
					지하수		1	식			
신규	2	조촌	240-6	철쭉		5	주	군산시 소룡동 1323-13번지 동아아파트 105/1302	이신애		
				대추나무		1	주				
				철쭉		6	주				
				철쭉		1	주				
				대추나무		2	주				
				철쭉		6	주				
				철쭉		2	주				
				무화과		1	주				
				철쭉		2	주				
				동백나무		2	주				
				자두나무		1	주				
				오가피		2	주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구분	연번	위치			지장물	상황 및 구조	편입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시	동	지번					주소	성명	
신규	3	군산	조촌	240-11	석류나무		1	주	군산시 소룡동 1323-13번지 동아아파트 105/1302	이신애	
					감나무		1	주			
					감나무		1	주			
					감나무		1	주			
신규	4		조촌	239-36	밤나무		3	주			
					두릅나무		50	m ²			
신규	5		조촌	239-34	감나무		1	주	군산시 나운동 835번지 주공30아파트 127/203	김근석	
					매실나무		1	주			
					사철나무		1	주			
					뽕나무		1	주			
					밤나무		11	주			
					감나무		1	주			
					밤나무		1	주			
					아카시아		1	주			
					자귀나무		1	주			
신규	6		조촌	239-32	대추나무		1	주			
신규	7		조촌	239-48	소나무		1	주			
					소나무		1	주			
					밤나무		1	주			
신규	8		조촌	239-34	분묘		2	기	군산시 나운동 835	김근석	
							1	기			

군산시 공고 제2010-1071호

시보 호외(2010.6.18)에 게재된 군산시 공고 제2010-1048호(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10-1049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10-1057호(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군산시장 문 동 신

시보내용	정정사항	비 고
<p>군산시 공고 제2010 - 1048호 공 고</p> <p>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u>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u>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군산시 공고 제2010 - 1048호 공 고</p> <p>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u>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u>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시보 제5쪽
<p>4. 의견제출</p> <p>□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u>2010년 7월 3일까지</u>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u>군산시장(참조:총무과장)</u>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4. 의견제출</p> <p>□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u>2010년 7월 5일까지</u>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u>군산시장(참조:총무과장)</u>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시보 제6쪽

시보내용	정정사항	비 고
<p>군산시 공고 제2010 - 1049호</p> <p>공 고</p> <p>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u>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u>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군산시 공고 제2010 - 1049호</p> <p>공 고</p> <p>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u>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u>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시보 제27쪽</p>
<p>4. 의견제출</p> <p>□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u>2010년 7월 3일까지</u>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4. 의견제출</p> <p>□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u>2010년 7월 5일까지</u>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시보 제28쪽</p>

시보내용	정정사항	비 고
<p>군산시 공고 제2010 - 1057호 공 고</p> <p>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u>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u>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군산시 공고 제2010 - 1057호 공 고</p> <p>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u>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u>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시보 제31쪽</p>
<p>4. 의견제출</p> <p>□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u>2010년 7월 3일까지</u>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u>군산시장(참조:총무과장)</u>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4. 의견제출</p> <p>□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u>2010년 7월 5일까지</u>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u>군산시장(참조:총무과장)</u>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시보 제32쪽</p>

군산시 공고 제2010-1083호

공 고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군산시장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산시발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고 민·관 협의 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안 제1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민·관 협의체계 구축
- 군산시발전협의회 구성으로 주요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기관 역할과 의결수립의 장을 마련하여 열린행정 구현

나. 협의회 기능 (안 제2조)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군산시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과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추진에 관한사항
- 각종 주민대상 교육,워크숍,포럼 개최에 관한 사항

다. 구 성 (안 제3조)

- 의장 및 부의장 포함하여 50인 이내 위원
- 위촉위원은 분야별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시의원,직능대표,언론인,대학,연구기관,기업체,공공기관,사회단체 등
- 임기 : 2년 (연임가능)

라. 회 의 (안 제6조)

- 시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마. 분과위원회 설치 (안 제8조)

-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별 위원회를 둘 수 있음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나. 규제심사 : 기획계 협조

다. 제 정 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7월 2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기획예산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장소 :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컴퓨터통신 등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기획예산과 창의분권계 (450-651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군산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한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군산시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

1.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산시 지역발전정책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주민 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각종 주민 대상 교육, 워크숍, 포럼 개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및 임명한다.

1.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발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련 과장 등 공무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간사 등) 협의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별로 간사 및 서기 각 2인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회 담당계장이 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협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별 위원회의 설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협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 및 의장이 관계전문가의 자문·심의·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협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재단법인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조직 위원회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 2010-1086호

「재단법인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군 산 시 장

1. 폐지이유

-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이사회를 개최,
2010년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행사를 폐지하고 군산과 새만금을 대표하는 새로운 축제를 발굴하기로 의결하고
-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이사회에서 해산을 의결함에 따라 조례의 목적이 소멸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동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재단법인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7월 2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지역경제과(전화 : 450-4361, FAX : 450-6391,

전자우편 : (zsn6802@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전략산업계 (전화 450-43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권리

·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조례 제 호

재단법인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재단법인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폐지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0 - 1094호

공 고

군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8일

군 산 시 장

군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제정 (안)

1. 제안이유

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 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군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문화원의 필요한 경비 보조 등을 통하여 군산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 제1조 ~ 제2조

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 제3조

다. 지원범위 명시- 제4조

-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보조 및 필요한 재산, 시설 대여 등

라. 보조금의 신청 - 제5조

마. 지도·감독 - 제6조

바.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제출 - 제7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7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

군산시청 문화체육과 (전화 : 450-4225, FAX : 450-639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문화체육과(전화 450-4225)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군산시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군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 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②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대상) ① 시장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② 시장은 문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4조(지원범위 등)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

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문화원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면 「군산시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3조의 각종 예산 지원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문화원장은 회계연도 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보조사업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 및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0 - 1095호

공 고

군산시채만식문학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8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채만식문학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1. 제안이유

가. 군산시 채만식문학상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침체되어 있는 채만식 문학상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상 후보자의 추천을 운영 위원회에서 추천한 추천위원으로 제한함으로써 문학상의 격을 높이고, 작품성 높은 작품을 추천 받고자 함

나. 군산시 채만식문학상 수상자의 선정경위 및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문학상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갖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나. 제10조(수상후보자의 추천) - 개정

- 문학상 수상후보자 추천 관련 제1항 개정

- 문학상 추천대상 작품 조건 제2항 제정
- 추천위원 조건 제3항 제정

다. 제11조(수상자의 결정) - 개정

- 심사위원 추천관련 심사위원 조건 제2항 제정
- 수상자의 선정경위 및 결과 공개 제3항 제정

라.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에 따른 개정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7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
 군산시청 문화체육과 (전화 : 450-4225, FAX : 450-639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문화체육과(전화 450-422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채만식문학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군산시 채만식 문학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채만식문학상조례”를 “군산시 채만식 문학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고 채만식의 작품세계와 높은”을 “채만식의”로,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을 “문학상”으로 한다.

제2조 중 “문학상”을 “채만식 문학상(이하“문학상”이라한다)”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공모 대상) 공모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며, 채만식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문단경력 5년 이상의 기성 문인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문학상은 소설 및 평론 부문으로 한다.

② 시상 인원은 매년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시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추천위원 및 심사위원”을 “추천·심사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부의 하는”을 “부의하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11인”을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학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을 “문학 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을 겸비한”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없는”을 “없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있는”을 “있을”로 한다.

제9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10명 이내의 추천위원이 추천한다.

② 수상후보자 추천대상 작품은 추천일 기준 2년이내에 발표한作品集 또는 장편소설로 한다.

③ 추천위원은 중앙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설가, 문학평론가 및 일간지 문화부 기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11조(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7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심사위원은 중앙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설가, 문학평론가 및 일간지 문화부 기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수상자의 선정 경위 및 결과는 공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문학상은 매년 군산 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군산 시민의날에 수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날짜를 별도로 정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을 지급하며, 수상자의 문학 강연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과 수상자의 강연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④ 이 조례에 의하여 문학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기록보존) 시장은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공적사항 및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 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와 추천위원 및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군산시채만식문학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군산출신 소설가 고 채만식의 작품세계와 높은 작가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 소설문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군산시채만식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주최 및 주관) <u>문학상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게 할 수 있다.</u></p> <p>제3조(시상부문 등) ①<u>문학상의 시상 부문은 소설 및 평론부문으로 한다.</u> ②<u>시상인원은 매년 1인으로 하며 심사결과 시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제4조(수상자의 요건) <u>문학상의 수상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채만식문학 정신을 함양하고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로 한다.</u></p>	<p>군산시 채만식 문학상 조례</p> <p>제1조(목적) ----- 채만식의 ----- ----- ----- 문학상----- -----.</p> <p>제2조(주최 및 주관) 채만식 문학상(이하“문학상” 이라한다)----- ----- -----.</p> <p>제3조(공모 대상) 공모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며, 채만식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문단경력 5년 이상의 기성 문인으로 한다.</p> <p>제4조(시상 부문) ① 문학상은 소설 및 평론 부문으로 한다.</p> <p>② 시상 인원은 매년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시상 대상자가 없</p>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생략)
- 2. 추천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 3. (생략)
- 4. 시장 또는 운영위원회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위원은 문학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생략)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생략)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 2. 추천·심사위원 -----
- 3. (현행과 같음)
- 4. ----- 부의하는 ----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 1명을 포함한 9명 -----

② (현행과 같음)

③ ----- 문학 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을 겸비한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없을 -----
-----.

제8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생략)

제9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10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20인 이내의 추천위원, 월간 문학지 발행인, 각 대학장 및 문인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제11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7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시상 및 전시) ① 문학상은 매

제8조(회의) ① -----
----- 있을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 -----
----- 1명-----

제10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10명 이내의 추천위원이 추천한다.

② 수상후보자 추천대상 작품은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발표한 작품집 또는 장편소설로 한다.

③ 추천위원은 중앙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설가, 문학평론가 및 일간지 문화부 기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11조(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7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심사위원은 중앙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설가, 문학평론가 및 일간지 문화부 기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수상자의 선정 경위 및 결과는 공개한다.

제12조(시상 및 전시) ① 문학상은 매

년 군산시민의 날에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창작 지원금을 지급하며, 수상자의 문학 강연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작지원금과 수상자의 강연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이중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문학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기록보존) 시장은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공적사항 및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실비보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년 군산 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군산 시민의 날에 수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날짜를 별도로 정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을 지급하며, 수상자의 문학 강연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과 수상자의 강연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④ 이 조례에 의하여 문학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기록보존) 시장은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공적사항 및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와 추천위원 및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0 - 1103호

공 고

군산시 정보화 조례 제정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 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정보화 조례 제정 안

1. 제정이유

-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지식정보자원관리법」과 통합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법률명 변경 및 전부개정 시행(2009. 8.23)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 행정안전부 정보화총괄과-2340(2009.10.27)호 및 도 행정지원관-27994(2009.11.11)호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군산시 정보화 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6조)
-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둠 (안 제8조)
-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유치하도록 함(안 제10조)
-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첨단 정보통신기반의 지역정보서비스 제공 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 신설(안 제12조, 제14조, 제16조)
-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인터넷 중독의

예방·해소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7조)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 지원과 통신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8조)
-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토록 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
군산시청 정보통신담당관 (전화 : 450-4461, FAX : 450-4030)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정보통신담당관(전화 450-44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정보화 조례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 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화의 기본원칙)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시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2장 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전라북도 정보화 기본계획 및 각 부서별 정보화 사업 추진 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며, 이 조제 제6조에 따른 군산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통신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및 정보의 공동 활용
6.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8.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9.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1.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한다.

제5조(정보화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군산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군산시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자치행정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시 분청 국장 4인 이내

3.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 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기회 개최후 시급을 요하는 정보화사업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 및 점검
3. 정보화 시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4. 시가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의 사전심의 조정
5.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통신담당관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추진에 앞서 상호 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방지·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보화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정보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면제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과다하게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 감면비율 = 과다소요시간/전체소요시간

제14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5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보관 및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기술적 보안조치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보호 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산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군산시 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군산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0-1104호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역 기업의 수도권 이전을 방지하고, 신규 투자와 고용증대에 기여한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지방세 지원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로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취득하는 부동산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7월 2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전화 063-450-4255, 팩스 063-452-8162, 전자우편 : hyunk6809@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담당자 김현 (전화 063-450-425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2(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군산시 관할 구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을 영위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의2는 2010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28조의2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28조2(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u> 군 산시 관할 구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을 영위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p>

군산시 공고 제 2010 - 1106호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0년 6월 30 일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조례를 정하는 경우에 따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시행규칙 제7조제3항)

2. 주요내용

가. 목 적 (안 제1조)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지정기준 및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함.
- “수탁기관”이란 함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위탁(의뢰)한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함.

다. 사실조사의 위탁 · 의뢰 (안 제3조)

-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과 인력,시간이 절감되는 경우

- 사실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경우

라. 수탁기관 (안 제4조)

- 사실조사를 의뢰받을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과 관련된 경험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마. 위탁 · 의뢰의 조건 등 (안 제5조)

-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개인정보보호, 효력발생 등의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7 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지

- 군산시청 지역경제과(전화 063-450-6230, Fax 063-450-6391)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경제과(☎ 063-450-62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지정기준 및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함은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위탁(의뢰)한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의 위탁 · 의뢰)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위탁 ·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과 인력,시간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경우

제4조(수탁기관) 사실조사를 의뢰받을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과 관련된 경험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위탁 · 의뢰의 조건 등)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개인정보보호,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

함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